

리보금리(LIBOR) 산출 중단 관련 여신[한도/개별]거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__년 __월 __일

본인 _____ (인)

주소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20__년 __월 __일
자 여신[한도/개별]거래 약정서(이하 “기존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
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리보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이하 “리보금리”라 합니다) 산출기관의 감
독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청이 리보금리가 산출 중단되거나 대표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고 2021년 3월 5일에 발표함에 따라, 리보금리 산출 중단 시 적용할 대체금리 및 그 전
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이 추가약정서(이하 “이 추가약정서”라 합니다)를 체결합니다.

제 2 조 (리보금리의 변경 및 기준금리 전환일)

- ① 기존 약정서에서 기준금리로 사용된 리보금리는 기존 대출의 경우 아래 통화 별
명시된 리보금리 산출중단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변동주기 시작일에, 산출중
단일 이후 발생하는 한도 대출 내 신규 대출의 경우 해당 신규대출 실행일
(이하 “기준금리 전환일”)에 이 추가약정서의 별지1 내지 별지3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체금리(이하 “대체금리”라 합니다)로 전환됩니다.

통화 별 리보금리	산출중단일	대체금리
USD LIBOR (익일, 1, 3, 6, 12개월물)	2023년 7월 1일	별지 1
JPY의 모든 기간물 LIBOR	2022년 1월 1일	별지 2
EUR의 모든 기간물 LIBOR	2022년 1월 1일	별지 3

- ② 본인이 기존 약정서에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
행과 별도 협의하여 별지1 내지 별지3에 명시된 복리 산정 방식의 무위험지표금리

여신[한도/개별]거래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서

를 대출에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리보금리가 대체금리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약정서에 정한 가산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중도상환절차)

- ① 본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금리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산출중단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하 “채무변제일”이라 합니다)까지 기존 약정서에 따른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② 위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 변제일까지 기존 약정서에 따른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산출 중단되는 경우 산출 중단 직전 최종금리) 및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③ 만일 채무변제일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약정서에 따른 지연 배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4 조 (대체금리 전환의 사전고지)

은행은 산출중단일 도래 전에 본인에게 이 추가약정서에 따라 적용될 대체금리의 예상 금리 수준 및 전환 절차 등 금리 전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녹취), SMS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기준금리의 전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기존 약정서에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추가약정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에 명시된 복리 산정 방식의 무위험지표 금리를 대출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p>본인은 상기 리보금리 산출 중단 시 적용하게 될 대체금리와 대체금리의 적용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p>	
<p>본인</p>	<p>(인)</p>

별지 1. USD 리보금리에 대한 대체금리

1. 기존 약정서에서 USD 리보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 경우, 대체금리는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a) 아래 표에 기재된 값과 b)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2주 간의 USD 리보금리와 SOFR 간 차이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의미합니다.

가. 기간물 SOFR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USD 리보금리	1개월물 SOFR + 0.11448%
3개월물 USD 리보금리	3개월물 SOFR + 0.26161%

나. 기준금리 전환일에 기간물 SOFR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SOFR (단리)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USD 리보금리	1일물 SOFR (단리) + 0.11448%
3개월물 USD 리보금리	1일물 SOFR (단리) + 0.26161%

다. 1일물 SOFR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기존 약정서에 따라 실행한 외화대출에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아래의 금리를 대체금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a) 아래 표에 기재된 값과 b)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2주 간의 USD 리보금리와 SOFR 간 차이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의미합니다.

가. 1일물 SOFR (복리)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USD 리보금리	1일물 SOFR (복리) + 0.11448%
3개월물 USD 리보금리	1일물 SOFR (복리) + 0.26161%

3. 위 대체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1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SOFR**”라 함은 뉴욕연방준비은행(또는 SOFR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newyork fed.org](http://www.newyorkfed.org) 또는 그 밖에 SOFR 산출기관이 SOFR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의미합니다.

나. “**기간물 SOFR**”라 함은 어느 해당 기간에 대하여 CME 그룹이 산출하여 고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FR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다. “**1일물 SOFR (단리)**”라 함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 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 “**1일물 SOFR (복리)**”라 함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별지 2. JPY 리보금리에 대한 대체금리

1. 기존 약정서에서 JPY 리보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 경우, 대체금리는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a) 아래 표에 기재된 값과 b)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2주 간의 JPY 리보금리와 TONA 간 차이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의미합니다.

가. 기간물 TONA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JPY 리보금리	1개월물 TONA - 0.02923%
3개월물 JPY 리보금리	3개월물 TONA + 0.00835%

나. 기준금리 전환일에 기간물 TONA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TONA (단리)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JPY 리보금리	1일물 TONA (단리) - 0.02923%
3개월물 JPY 리보금리	1일물 TONA (단리) + 0.00835%

다. 1일물 TONA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기존 약정서에 따라 실행한 외화대출에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아래의 금리를 대체금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a) 아래 표에 기재된 값과 b)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2주 간의 JPY 리보금리와 TONA 간 차이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의미합니다.

가. 1일물 TONA (복리)와 조정분 (연 이율)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JPY 리보금리	1일물 TONA (복리) - 0.02923%

3개월물 JPY 리보금리	1일물 TONA (복리) + 0.00835%
---------------	--------------------------

3. 위 대체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2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TONA”라 함은 일본은행(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oj.or.jp> 또는 그 밖에 TONA 산출기관이 TON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기간물 TONA”라 함은 해당 기간에 관하여 일본은행(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이 관리하고, QUICK Benchmarks Inc. 또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른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이 고시한 TONA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TONA (단리)”라 함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라. “1일물 TONA (복리)”라 함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별지 3. EUR 리보금리에 대한 대체 금리

1. 기존 약정서에서 EUR 리보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EUR 리보금리와 EURIBOR 간 차이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가.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EUR 리보금리	EURIBOR 1개월물 + 조정분
3개월물 EUR 리보금리	EURIBOR 3개월물 + 조정분

나.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2. 기존 약정서에 따라 실행한 외화대출에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아래의 금리를 대체금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정분”이라 함은 a) 아래 표에 기재된 값과 b) 산출중단일 기준 직전 2주 간 EUR 리보금리와 EuroSTR 간 차이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의미합니다.

가. 1일물 EuroSTR (복리)와 조정분의 합.

기존 약정서상 기준금리	대체금리 (연 이율)
1개월물 EUR 리보금리	1일물 EuroSTR (복리) + 0.0456%
3개월물 EUR 리보금리	1일물 EuroSTR (복리) + 0.0962%

3. 위 대체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3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EURIBOR”란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또는 그로부터 동 금리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가 관리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euro interbank offered rate를 의미함

니다.

나. “EuroSTR” 이란 유럽중앙은행(또는 그로부터 금리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에서 관리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euro short-term rate을 의미합니다.

다. “1일물 EuroSTR (복리)” 라 함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EuroSTR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